

금융투자 분쟁조정 주요사례 · 판례요약

POCKET BOOK





1. 분쟁조정사례 및 주요 판례 02

1. 주식 등의 부당권유 04
2.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12
3. 주문 관련 분쟁 19
4. 일임매매 23
5. 임의매매 28
6. 기타 분쟁사례 및 판례 34
 - 횡령사건 34
 - 전산장애 39
 - 기타 분쟁 사례 및 판례 43



2. 2015년 이후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 47



1

● 분쟁조정 사례 및
● 주요 판례



금융투자상품 정의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으로서,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과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고,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 주요 금융투자상품 : 주식, 채권 펀드(주식형/채권형/MMF 등), 파생상품(선물/옵션), 파생결합증권(ELS, DLS), Wrap Account, 신탁, RP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의사항

- 고객의 투자성향, 목적, 경험 등을 금융회사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권유를 받을 때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에게 상세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은행예금과 달리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예상밖의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특정상품을 선택하더라도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므로 투자결정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 계좌관련 정보(HTS ID, 비밀번호 등) 및 증권카드 관리에 주의하고, 거래내역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은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거래 단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부당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권유를 하면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부당하게 권유한 경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주문을 금융투자회사가 다르게 처리하거나, 주문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의 매매주문을 제출 받아 처리한 경우
일임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임계약 취지를 위반하여 수수료 수입목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도한 매매를 일삼은 경우 등 고객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의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관리를 맡기지 아니하였고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매매주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고객의 예탁 자산으로 마음대로 매매한 경우
기타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령으로 인한 손해,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 기타 증권회사 직원의 기망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상기의 분류기준은 유사한 형태의 분쟁을 임의로 구분한 것임



1 II 주식 등의 부당권유



부당권유란?

-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당권유행위는 고객의 기존 거래경위와 방법, 투자상황,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볼때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서 당해 권유행위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를 의미합니다.

- ①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에게 거래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 ②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

-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법원을 통해 부당권유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주요한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손실보전각서를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행위
- ② 합리적 근거없이 단정적 판단으로 한 투자권유 행위
- ③ 금융투자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없이 매매권유하는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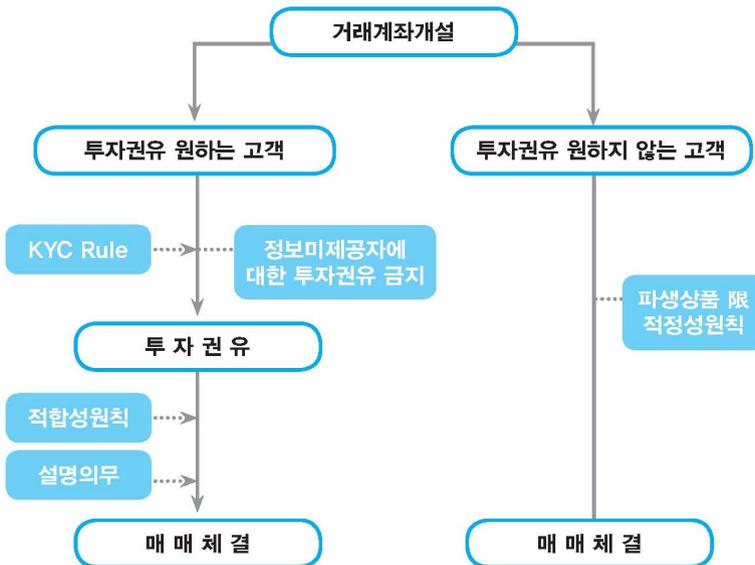


부당권유행위 유형

- 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 부당권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및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등도 부당권유행위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거래계좌 개설시 절차를 보면 각 단계 별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의 준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거래계좌 개설시 절차도〉



☞ KYC Rule :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원칙 등은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 KYC(Know-your-customer) Rule : 고객의 재산상황, 투자경험·목적 등을 파악하는 것



〈자본시장법의 부당권유 행위 관련 조문(요지)〉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적합성 원칙(제46조)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2.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됨

☞ 투자권유를 위해서는 고객이 어떠한 유형의 투자자 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이를 “know your customer rule”이라 일컫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2.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 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 본 조항의 취지는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과 별도로 두텁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의무(제47조)

1.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2.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됨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 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사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추정(제48조)

-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 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 직원의 부당권유에 따라 주식 등의 매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사후 당해 주식 등을 매도하여 얻은 매도대금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객이 손실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종합적으로 반영(과실상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특히, 부당권유의 경우 고객 성향에 따라 부당성에 대한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고객의 나이나 학력, 기존 투자경험 및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부당권유 판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검증 안 된 투자정보를 근거로 한 투자권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증권회사 직원은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인데 소문날까봐 밝힐 수 없다며 당장 투자 안하면 시기를 놓친다고 투자를 적극 권유
- 고객은 투자이후 주가하락에 따라 매도하려 했으나 이때 증권회사 직원은 매도를 만류
- 이후 주가가 더 하락하자 고객은 손실보전 각서를 요구하고 직원이 각서를 써 줌에 따라 매도는 또 보류되고 손실은 이후 더 확대

판단내용

- 검증 안 된 투자정보를 미끼로 대량매수를 유도하고 고객의 매도의사에도 손실보전 각서까지 써주면서 매도를 보류하게 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 다만 고객도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투자하였고 손실 보전만을 믿고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직원의 책임을 60%만 인정



2 부당권유 판례

[서울남부지법 2010. 7. 23 선고 2009가합13300]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매매의 종목 · 수량 · 일시까지 권유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케이블 방송사에서 주식강사로 활동하는 컨설팅업자가 운영하는 투자업체에게 회비를 내고 문자메시지로 종목 · 수량 · 일시까지 매수/매도를 정해진 투자권유를 받아 주식 거래를 했으나 손해를 입음

판단내용

- 컨설팅업자의 투자업체는 정식 신고한 업체도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일지라도 구체적인 종목 · 수량 · 일시까지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섬
- 다만, 고객도 컨설팅업자의 투자업체가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신중히 알아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70%만 컨설팅업자의 책임을 물음
- 또한, 케이블 방송사도 출연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컨설팅업자와 연대해 배상토록 함



3 부당권유 판례

[서울북부지법 2009. 5. 15 선고 2008가단66235]

증권회사 직원이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을 잘못 이해하고 알려준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증권회사 직원은 무상증자가 예정된 종목 매수를 권유하면서 신주배정기준일을 잘못 이해하고 알려줘 고객은 권리락 이후 주식 매수를 하여 무상증자를 받지 못함

판단내용

- 증권회사 직원은 주식거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신주배정기준일의 개념을 잘못 알고서 안내를 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직원 및 사용자책임이 있는 증권회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고객도 잘못된 설명을 확인하지 않은 점, 권리락후 저렴하게 매수한 점, 권리락 전이라면 매수주식수도 줄었고 무상증자분도 적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증권회사 및 직원의 책임을 30%만 인정



2 II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저금리 기조로 펀드, ELS, DLS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불완전판매가 주요한 분쟁 유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불완전판매 관련 기본 법리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적용되는 기본 법리는 앞서 부당권유에서 설명한 부당권유의 금지(자본시장법 제49조),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및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만약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위험도 및 원금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원금보전을 약속하였거나 하는 등의 행태가 수반되어 고객의 투자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함으로써,
- 결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판매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에 따른 충분한 설명 여부가 중요



- ①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 ② 원금손실 가능성이 우리 국채 수준이라는 등 고수익의 안정성만을 강조한 경우
- ③ 선물환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환헤지에 대해 개략적으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④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특정금전신탁을 가정주부에게 판매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 있고 높은 이자율만 강조한 경우 등

(불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나이보다 투자경험 등 실질이 중요

- ① 고령의 나이에 투자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결정시 투자경험이 있는 배우자가 동석한 경우
- ② 고령이지만 투자경험이 있고 기초자산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었던 점이 있는 경우
- ③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투자 설명서 등에 그러한 표시가 있고 투자자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 등



4 불안전판매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0. 7. 16 선고 2009가합51047]

선물환 계약관련 투자경험, 지식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다르게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 5명은 역외펀드 가입당시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나 만기시 환율이 변동되어 손해를 봄
- 투자자 A는 파생상품 등에 이해도가 높은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아들이 투자를 대신하였고, 투자자 B는 다수의 역외펀드 및 선물환 경험이 풍부함

판단내용

- 선물환에 대한 지식, 경험이 부족한 3명의 경우, 직원이 계약 특성,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
- 다만, 투자자들도 신중한 판단이 부족했고, 금융위기를 사전 예측하기 어려웠을 점 등을 감안해 직원의 책임을 40%로 제한
- 그러나, 펀드, 선물환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높은 투자자 A 및 B에 대해서는 회사 및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5 불안전판매 판례

[청주지법 2010. 1. 3 선고 2009가합2924]

고객이 서류에 단순히 서명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품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손해의 일부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일본펀드 가입시 환율변동 위험에 따른 환헤지를 위해 선물환계약도 동시에 체결했으나 만기에 환차손을 입음
- 비록 가입 서류에 신청인이 날인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환차손 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선물환 계약과정에서 환차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거나 고객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 바 없고,
- 단지 서류상 신청인 날인만 받았을 뿐이라며 환율상승에 따른 위험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 다만, 투자자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계약체결을 했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손해액의 40%를 배상책임으로 제한



6 불안전판매 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첫 번째 계약 만기일에 설명을 들은 동일 상품에 대해 두 번째 계약시 설명을 못 들었어도 두 번째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2007년 해외펀드를 가입하면서 1차 선물환 계약을 맺었으나 환차손을 입은후 1차 선물환 계약 만료후 펀드를 해지하지 않고 2008년 2차 선물환 계약을 맺었으나 다시 환차손을 입음
- 제1차 및 제2차 계약 모두 설명을 못 들었다며 소송제기

판단내용

- 1차 선물환 계약시 설명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1차 계약 만기시에 환차손금을 입금하면서 선물환 계약의 의미와 정산금 발생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 2차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1차 선물환 계약과 달리 2차 선물환 계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7 불안전판매 판례

[부산지법 2011. 5. 24 선고 2010가단26093]

원금손실 위험성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로 투자권유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금융회사 직원은 고령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품설명서를 제시한 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
- 또한 상품설명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 만기시 중요한 가격결정에 대한 정보를 누락함

판단내용

-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험성 등을 포함한 상품 특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나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만기시 가격정보를 누락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
- 다만, 투자자들도 신탁상품의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



8 불안전판매 판례

[서울고법 2010. 5. 26 선고 2009나43371]

금융회사 직원이 펀드투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각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사례

사건개요

- 금융회사 직원은 펀드 가입고객에게 펀드 평가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차액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줌

판단내용

- 펀드 가입 고객의 항의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각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기각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등의 금지)는 손실보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익보장이나 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



3 주문 관련 분쟁

● 주문처리 오류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매도·매수의 구분, 종목, 수량, 가격, 주문 유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주문입력 실수 등의 이유로 고객의 주문의사와 다르게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

주식의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거나 신용거래시에 채무상환 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추가 납부가 안 된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마진콜 (Margin Call) 요구를 받았음에도 추가증거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대매매는 금융투자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한 권리자적 지위에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반대매매 실행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즉각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주문권한 없는 자로부터의 주문

금융기관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차명계좌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계좌명의인인 사실을 이용하여 차명거래자 몰래 현금을 인출하거나 매매거래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영업현장에서 주문권한이 없는 자로부터의 주문행위가 자주 문제 되는 경우는 계좌명의인이 아닌 그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지로부터의 매매거래 위탁을 받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매도주문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 당초 매도주문으로 얻을 수 있었던 매도대금
- 매도주문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매도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매도대금



9 매매주문 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90184, 2009다90191]

고객이 이미 추가증거금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증권 회사에 반대매매 통지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례

사건개요

- 선물옵션계좌에 추가증거금 발생사실을 고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안 됨
- 고객이 HTS에 접속해 추가증거금 발생 사실을 확인함
- 다음날 08:39에 정오까지 추가증거금 결제가 되지 않으면 반대매매 될 것임을 고객에게 통보했으나 결제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실행됨

판단내용

- 증권회사 직원이 반대매매를 실행하기 전 고객에게 전화하여 추가증거금 발생사실과 미결제시 반대매매가 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 설령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이미 HTS에 접속해 추가 증거금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 증권회사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음



10 매매주문 판례

[의정부지법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비율이 감소한 경우 주식을 반대 매매 한다는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민법상 상행위는 유질계약을 허용)

사건개요

- 고객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시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 금융회사는 담보비율이 낮아지자 주식중 일부를 정리했고, 투자자는 유질계약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민법은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상행위에 대해 유질계약을 허용(상법 제59조)하고 있음. 따라서 상법인 금융회사가 대출을 하는 것은 상행위이므로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민법 제339조)에 해당되지 않음

*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안갚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맡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는 일

- 채무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대매매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시기, 방법 등을 금융회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볼 수 없음



4 II 일임매매

- 자본시장법(제97조)에서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투자상품 운용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투자일임계약의 성격**

투자일임계약은 민법 상 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수임자(금융투자회사)의 투자행위로 발생한 손익결과가 위임자(계좌주)에게 귀속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순한 시장전망에 대한 잘못된 판단 또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능력부족만을 이유로 투자일임 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일임매매**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이득을 위해 매매한 경우나, 투자일임계약서의 일임취지를 일탈 또는 초과해 매매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과다일임매매’입니다.



● 과다(과당)일임매매의 판단기준

과다일임매매는 일임계약을 근거로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성향의 소유자로서 직원에게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인 매매지표상으로 과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

[과다매매로 인한 재산상 손해]

- 과다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잔고
- 과다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
- 과다매매가 아니었다더라도 발생하였을 제비용이나 예탁금 손실 등*

- * 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여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 ②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다매매와 무관하게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손해



11 일임매매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58332]

고객 투자성향에 비해 과도한 위험성을 수반한 거래(옵션 만기일 마감시간에 대량의 콜옵션 매수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옵션매매를 일임하였는데, 직원은 2002년 4월말 KOSPI 200 옵션의 최종거래일 마감 시간 7~8분을 남기고 상승을 예상하여 콜옵션을 대량 매수함 (예수금의 2/3)
- 장 마감시 KOSPI 200 지수는 107.5로 콜옵션의 행사가격 107.5와 일치하여 콜옵션 행사가치가 상실되어 거래의 손해를 봄

판단내용

- 옵션만기일 거래마감시간 직전 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며 만기임박으로 인해 손실을 만회할 시간적 기회조차 없는 것이므로
- 증권회사 직원의 대량 콜옵션 매수행위는 고객의 투자상황과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어, 손해액의 30% 화해권고결정



12 일임매매 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실제 투자경험이 있는 자의 선물·옵션 투자일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직원의 부당권유, 과다매매, 통지의무 위반을 부인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선물·옵션 경험이 있는 자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일임을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자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권유, 과다매매,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

판단내용

- 고객은 실제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 거래설명서 교부, 설명사실, 이를 확인하는 자필서명 등을 종합할 때 부당권유를 인정 안함
- 직원이 행한 스트랭글 매도*는 무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많은 투자자가 동 전략을 사용하고, 고객도 동 전략을 추구한 걸로 보이며 실제로 동 전략을 용인한 점, 따라서 단지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으로 과다매매로 볼 수는 없음

* 스트랭글 매도는 행사가가 다른 콜과 풋을 매도하는 것으로 그릇을 엮은 모양으로 그려지는 횡보 옵션전략

- 고객은 HTS로 거래내역을 조회해 왔으므로 증권회사는 각종 통지 및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



13 일임매매 판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65303]

고객이 일임한 투자원금 전액을 특정주식 한 종목만을 과도하게 매매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증권회사 직원은 코스닥에 상장된 학습지 회사에 고객이 일임한 자금 전액을 투자했다가 상장폐지됨으로 인해 고객은 거의 전액을 손해봄
- 32개월 동안 코스닥 한 종목만 대상으로 매매회전율이 2046%로 과다한 거래를 하고 이로 인해 수수료 등이 총 투자원금의 약 13%로 적지 않음

판단내용

- 고객은 투자원금 전부를 특정 한 종목에만 투기적 단기매매를 감수할 정도의 투기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직원은 한 종목에만 투기적 단기매매를 반복했고 이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과당매매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



5 임의매매

- 임의매매는 임직원이 매매거래에 관한 개별 또는 포괄적인 위탁을 받지 않고 고객의 위탁자산으로 매매거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투자일임약정 여부 판단

임의매매는 결국 투자일임약정이 없는 가운데 임직원이 자의적으로 매매한 것이므로 투자일임약정의 실제 존재 여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임의매매를 금지(제70조)하고 투자일임의 경우에도 투자 일임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성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에 부여된 업무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사후 추인 여부

임의매매 후에라도 고객이 수용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기존의 임의매매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의매매 추인 효과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객은 임의매매의 수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고객은 임의매매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자신의 계좌상황 등을 점검하고 즉시 금융투자회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임의매매를 중단한 시점은 손해금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될 수도 있어, 인지시점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금융투자회사에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액의 산정기준

[임의매매로 인한 재산상 손해]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의 계좌잔고 - 임의매매사실을 인지하고 이의제기를 한 시점에서의 계좌잔고

다만, 실제 손해배상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고객이 손실확대에 영향을 준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과실상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고객의 장기간 거래내역 확인 소홀 또는 계좌번호·비밀번호 관리 소홀, 임의매매 인지(가능)시점 이후의 대처 미흡 등



● 임의매매에 따른 처벌여부

임의매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처해집니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의 차이점]

- 임의매매와 일임매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주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임의매매는 매매거래에 대한 위임이 없었음에도 직원이 자의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인 반면,
- 일임매매는 매매거래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의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직원이 매매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임의매매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손실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나,
- 투자자로부터 받은 매매권한을 가지고 매매한 일임매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고 직원의 충실의무위반 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4 임의매매 판례

[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2다2232]

직원이 고객 몰래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신용거래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증권회사 직원에게 신분증과 인장사용을 허락하고 주식위탁계좌를 개설을 요청했으나 직원이 고객 모르게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신용거래를 하다 고객에게 들킴
- 이후 고객은 비밀번호만 변경하고 신용매수 주식은 처분하지 않고 기존 현금만 인출한 후 신용거래는 중지하되 현금거래만 하도록 요청
- 6개월후 신용매수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고객은 손실을 입음

판단내용

- 고객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신용거래계좌 개설과 신용거래를 한 행위는 임의매매로 불법행위에 해당
- 직원은 고객이 신용거래를 안 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하여 임의매매 추인을 주장하나, 고객에게는 신용거래한 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신용거래 추인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고객이 직접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신분증 등을 맡긴 점, 신용거래이후 안이한 대처로 손실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하여 손실액의 60%만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



15 임의매매 판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25049]

고객이 직원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하여 임의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A주식의 경우 사전 설명을 듣고 고객이 매수에 동의하였고, B주식의 경우 사전 상의한 후 매수하고 매수통지를 하였으나 고객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C주식의 경우 매도이후 고객이 이를 알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상회복, 손해보전 요구를 취하지 않고 매도 금액으로 다른 주식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

판단내용

- 사후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묵시적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임의매매가 아니라고 판단



16 임의매매 판례

[대구고법 2008. 4. 18 선고 2007나4487]

고객의 특정종목 매수 금지 요청에 불응해 매수한 행위는 임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직원에게 일임하고 사후 보고 받는 형태로 거래를 해 왔음
- 고객은 특정 종목 매수에 대해 질책하고 추후 매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은 이를 어기고 동 종목을 다시 매수하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음

판단내용

- 고객이 특정 종목 매수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요청 하였으나 주식을 매수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임의매매에 해당
- 다만, 고객도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 우편통보를 받아 알 수 있었다는 점, 언제든지 지점방문을 통해 거래확인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직원의 책임을 70%로 제한



6 기타 분쟁사례

① 횡령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회사는 위탁계약을 통해 고객의 자금을 보관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횡령행위가 발생하면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융투자회사의 배상책임은 민법상 사용자책임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임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행위가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사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묻지 못하고 당해 임직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가 그러한 예입니다.

- 주점에서 친교모임 중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아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명의로 아닌 자신의 명의로 선물옵션 계좌를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투자자도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았으며 투자사항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용자 책임]

- 정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용자 책임 인정요건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 ③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
- ④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 사무집행 관련성

이 중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무집행 관련성(상기 ②)’입니다.

결국,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사용인을 대신하여 사무집행을 실행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회적인 활동영역을 확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법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고의·중과실)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7 횡령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무자격 투자상담사(現 투자권유대행인)의 대체출고후 편취 행위는 회사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증권회사 지점장은 A를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걸 알고도 채용하였고, A의 고객은 A에 의해 큰 수익을 보자 추가로 투자 금액을 증액하였음
- 이후 너무 많이 특정종목을 거래하면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제될 수 있다며 다른 계좌로 분산후 돌려주겠다고 제의하여 고객이 동의한 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

판단내용

- 무자격 투자상담사의 불법행위는 외관상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또한 지점장 역시 A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증권회사는 지점장의 사용자로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다만, 고객에게도 대체출고 등 잘못이 있어 이를 손해액 산정에 감안



18 횡령 판례

[서울고법 2010. 1. 21 선고 2009나160086]

투자를 목적으로 직원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직원이 약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직원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였으나, 개인적 거래의 부분에는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 증권회사 직원은 과거동료 지인들에게 ① ELS 투자를 권유하고 본인 개인계좌로 입금 받고, ② 소속 회사의 유상증자 실권주를 본인 명의로 배정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본인 개인계좌로 입금을 받음
- 증권회사 직원은 약속과 달리 선물·옵션 매매에 사용하고 거래의 손실을 봄. 지인들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증권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주장

판단내용

- ELS 투자금 유치는 직원의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사무집행 행위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
- 다만, 증권회사 직원과 이전 직장의 동료로서 금융관련업종 근무 경험자인 원고들은 ELS 가입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과실을 50% 적용
- 실권주 배정과 관련해서는 직무권한 및 직무 수행방법을 현저히 이탈한 행위로 개인적 거래일뿐 사무집행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 책임을 묻기 어려움



19 횡령 판례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나122968]

펀드매니저의 기망으로 인해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투자성과 자료 등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익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 펀드매니저가 가짜 상품을 소개하고 개인계좌로 거액을 입금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투자성과 자료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해 별다른 이익을 제기하지 않아 왔음
- 펀드매니저가 자산운용사 직인이 찍힌 펀드가입증명서 등 공문을 위조해 송부했으므로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자산운용사가 개인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지 않았고,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며,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사무집행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 투자자들은 펀드운용결과 자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별다른 이익제기를 하지 않는 등 중과실이 있어 자산운용사의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패소 판결



② 전산장애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특성

● 원인파악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전산장애는 금융투자회사 내부적 전산시스템 결함과 관련이 있는 전산장애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컴퓨터 성능미달, 시스템 결함이나 인터넷 장애, 거래소 매매체결 지연 등과 서로 유사하므로 실제 어느 문제로 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데 일차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고객의 매매의사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만일, 전산장애로 판명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 매매의사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 주문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본인의 매매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객의 매매의사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시의 호가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체결이 가능한 주문이었던지도 추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결국, 전산장애 복구 이후 동일종목에 대한 매매의 계속된 의사가 존재하여 매매한 결과가 전산장애 당시 매매가 체결 되었을 경우보다 더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된 경우에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어도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주식가격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기회비용 내지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됩니다.

●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전산장애로 인해 체결되지 못한 주문가격에 수량을 곱한 가격과 전산장애 복구 이후 실제 매매하기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가격의 차이가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산장애 복구 이후 매매가 지연됨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융투자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민법 제393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민사 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 빌린 물건의 시가는 통상 손해에 해당됩니다.

이에 반해 특별손해는 채권자(또는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는데, 민법은 이러한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또는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 전산장애 사례 [협회 분조위 회부전 종결 2009. 10. 26, 제2009-26호]

전산장애 발생으로 보유주식 매도를 못했다고 주장하나 매도 의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방식*을 이미 인지
 - * 전화주문이 가능하고 전화주문에 대해 HTS 수수료율 적용
- 09:00~09:33 증권회사의 전산장애가 발생, ① 투자자는 당일 07:20~09:04 까지 HTS 접속, ② 09:13~09:16까지는 지점에 세차례 전화를 걸어 보유종목의 시세 문의만 하고 매도주문은 하지 않음

판단내용

- 투자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3차례 전화시 매도주문을 하지 않은 바, 매도의사의 증거가 없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없음
- 전산장애 없이 정상적 매매를 가정하더라도 수익실현을 단정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의 기대수익을 특별손해라 함.
- 이 경우 증권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



21 전산장애 판례

[서울고법 1999.12.3. 선고 98나51680]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로 고객이 콜옵션 증목을 매수 못한 경우 정상적 거래가 되었다라도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증권회사 직원에게 콜옵션 매수를 요청했으나, 증권회사의 선물·옵션 위탁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에 일시적인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함

판단내용

-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일시적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장애 발생이 증권회사의 업무 상 잘못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 만일, 증권회사의 관리 소홀로 장애가 발생 했더라도 옵션 거래는 투자성과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 정상적인 매매라도 원고가 후에 이를 전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인과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22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0968]

펀드 판매회사 직원의 허위 자산운용보고서로 인해 환매 기회를 상실한 투자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펀드 판매회사 직원은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자산운용보고서를 보내 투자자의 환매결정 기회를 상실토록 함

판단내용

- 실제 수익률과 다르게 보고한 최초 보고일과 허위사실 인지일 기간 동안의 최고 수익률인 날의 제3영업일*(①)과 허위사실 인지일의 제3영업일(②)간의 평가금액 차액(①-②)에 대해 배상책임을 70% 적용하고,

* 펀드약관은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토록 함

- 금융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23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실권주 공모시 회계법인과 해당 회사가 기업가치 등을 허위로 산정하고 평가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A 회사는 비상장사로 유상증자시 실권주 공모를 하였고 회계법인은 당시의 주식가치를 평가
- A 회사는 적자 등으로 주당 본질가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B 회계법인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한 주당가치에 성장성 등을 더해 높은 공모가액을 산정하고 코스닥 상장, 외자유치 확정 등 미확정된 사항을 허위 안내
- 그 후 A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자본금 감소명령을 받아 발행주식 전액 무상 소각함

판단내용

- A 회사는 금융회사로서 주당 본질가치가 (-)로 인식할 수 있음에도 과다하게 공모가액을 부풀리고, 코스닥 상장 등 허위기재 한 것은 부당한 투자권유로 불법행위임
- B 회계법인은 주당본질가치가 (-)임에도 (+)로 과다 산정하여 주식공모절차의 신뢰를 해하는 불법행위를 함
- 법원은 A 회사 40%, B 회계법인 10%의 배상책임을 결정



24 기타분쟁 판례

[서울서부지법 2012. 3. 27 선고 2011가단59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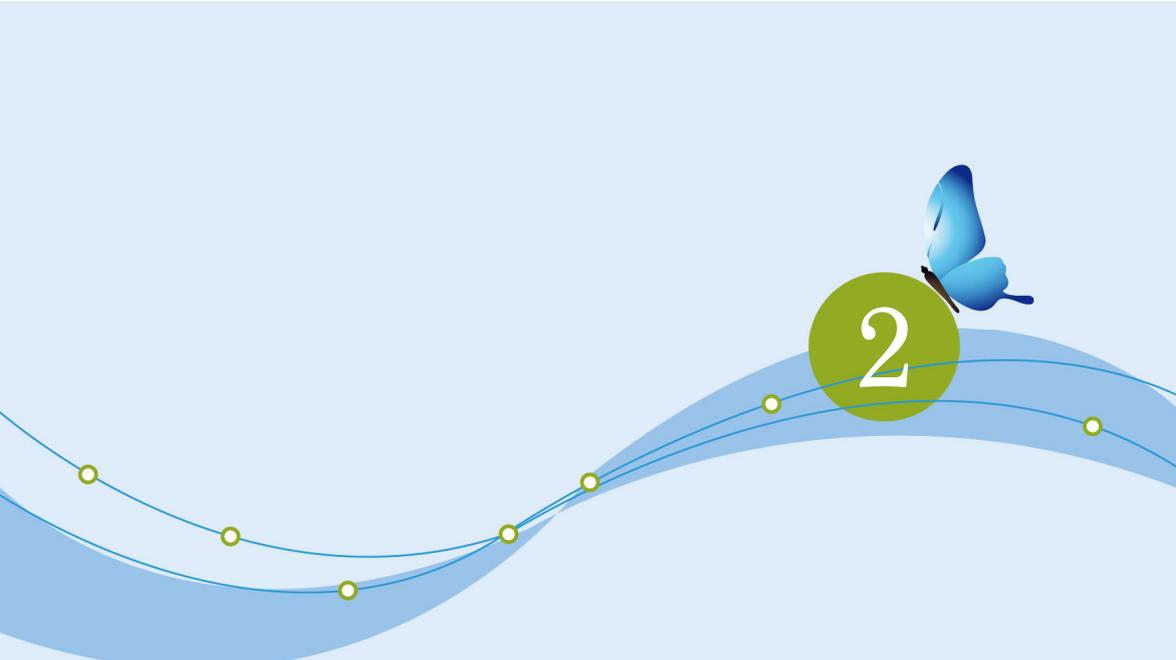
대표통장을 빌려준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견했었다면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사건개요

- 통장 주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익명인에게 넘겨줬고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됨

판단내용

- 통장 주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
- 다만, 피해자들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해 통장주인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인정



2

- 2015년 이후
- 분쟁조정 사례 및 판례



25 부당권유 판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13849]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인터넷 증권방송 특정업체가 대형계약을 체결하고 M&A에 관한 양해각서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
- 고객은 인터넷 증권방송 제공업체를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끼쳤어도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고객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었으나, 동 판결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 즉,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지는 대상은 아니더라도 허위정보를 제공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



26 불완전판매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 1. 9 선고 2013가합70946]

가정주부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정기예금처럼 투자 권유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가정주부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예금자보호상품이 아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이 있고 이자율은 8%라며 투자를 권유
- 손실위험 설명확인서의 확인란에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으로 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으로 날인

판단내용

-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권유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안정성을 강조하여 상품 설명을 소홀히 함
- 통장표지에 저축성 통장이라 적혀 있고, 손실위험확인서도 직원이 대신 날인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음
- 다만, 고객도 상품 등에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 기존에 주식 또는 채권형 펀드 투자한 경험이 있던 점, 대리 서명을 부탁한 점 등을 들어 금융회사의 책임을 40%만 인정



27 불완전판매 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사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계약을 권유했다면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들은 증권회사로부터 코스피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변동되는 선물옵션 거래 관련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 계약 상품을 소개받음
- 증권회사는 동 상품이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수익을 내고 손실이 크지 않은 안전한 상품으로 안내했으나 코스피200지수 급락으로 큰 손해를 입음
- 증권회사는 투자자문사와 고객 사이에 투자일임계약 체결토록 상품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만을 취했을 뿐, 기타 다른 수수료를 얻은 바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

판단내용

- 증권회사가 투자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했고 고객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권유를 중요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증권회사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손해액의 15~20%를 각각 지급토록 판결



28 불완전판매 판례

[대법원 2015. 5. 26 선고 2014다17220]

고객이 위험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주장하더라도 투자자료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고 고객의 투자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30년간 금융권 근무경력이 있는 고객이 건설사 CP(기업어음 A3-등급)를 투자했으나 경영악화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CP 변제를 못 받게 됨
- 위험성 높은 CP를 권유하면서 손실가능성을 설명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고객이 투자경험이 많고 신용등급 체계를 알고 있다면, 비록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 자산건전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증권회사가 신용등급의 체계를 알고 있던 고객에게 신용등급이 A3-임을 알렸고 투자대상의 긍정·부정요인이 모두 기재된 신용평가서 등을 교부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



29 불완전판매 판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15996]

선박펀드 대상인 선박업체의 위조 계약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례

사건개요

- A증권회사와 B자산운용사는 선박회사인 C사와 D사간 서로 맺은 정기용선(배를 빌림) 계약의 용선료 채권과 선박 가치를 담보로 하는 선박금융펀드를 출시후 판매
- 하지만 정기용선계약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고객은 투자금 손실을 보고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운용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후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자보호 의무를 부담. 용선료, 용선기간 등을 제대로 체크 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
- 판매회사는 진실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 투자에 관한 주요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역시 투자자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A 증권회사는 동 펀드를 사실상 주도했으므로 비록 판매회사이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30 전산장애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전산오류로 주문가능금액 부족이 주문가능으로 표기되어 고객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 증권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개요

- 전산오류 주문가능금액 부족이 주문가능으로 되어 옵션 주문이 접수되고 이어 계약이 체결됨
- 증권회사는 전산오류에 의한 주문이므로 추가증거금 납부를 요청했으나 고객이 이를 내지 않자 계좌를 청산해 추가 증거금으로 충당함. 이에 고객은 청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못 얻음

판단내용

- (구)전자금융거래법(제9조)는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때는 금융회사 책임으로 하고 있으나, 사고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는 경우로
- 고객이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의사에 따라 옵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의지가 충분하므로 증권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31 기타분쟁 판례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나33415]

보통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종 환매일로 보나, 이후의 손실보전각서 작성일을 기산점으로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는 2008년 11월 손해를 입고 최종 환매를 했으며 2009년 1월 일부 손실보전 각서를 받음
- 투자자는 2012년 7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뉴스를 접하고 소송 가능성을 인지했으므로 소송 가능성 인지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주장

판단내용

- 보통은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불법행위 사실을 최종 환매일에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최종 환매일로 판단,
- 동 사건은 추가적으로 각서를 쓴 부분이 인정되어 각서 쓴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봄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동 건의 소멸시효가 각서 쓴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2013년 9월에 소를 제기하여 투자자가 패소



32 기타분쟁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

파밍(Pharming)*수법에 속아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잃은 경우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금융기관의 정식 공지사항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정보 유출후 돈을 빼돌리는 수법

사건개요

- 고객들은 파밍 수법에 속아 보안등급, 보안확인에 필요하다는 요구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가짜 사이트에 입력했고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된 후 돈이 빠져나감

판단내용

- 보안카드 정보 등을 알려준 잘못이 있다 해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의 일회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은 위조에 해당되어
- (구)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서 규정한 접근매체 위조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고객들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들은 10~2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고객이 손해를 보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33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6. 4. 24 선고 2013다97694]

투자자가 회계법인의 허위·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회계법인이 작성한 부실 감사보고서를 보고 유망한 기업으로 판단하여 투자했으나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해 봄

판단내용

- 회계법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그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음
-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 참가자들에게 주식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무지, 우발채무, 부외부채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사전고지 되었지만,
- 주식 가치를 조사·파악해야 할 책임과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주식 매수인들에게 있으나, 감사 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은 인정되어 회계법인에게 손해의 40%를 배상토록 판단



34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금융기관이 ELS 만기일 장종료 직전에 대량매도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시세조종 또는 부당거래행위로 인정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들은 A회사와 B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증권회사 ELS 상품*에 가입
 - * 2년후 만기상환시 한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75% 미만이면 원금손실
-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 회피를 위해 외국계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 계약을 맺음
- 고객들은 만기일을 앞두고 75%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B회사의 주가가 만기일 14:50~15:00 외국계은행이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소송 제기

판단내용

-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외국계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계은행이 상환기준일에 B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35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108320]

금융기관이 ELS 만기일에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매도한 경우 시세조정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파며 위험을 회피

사건개요

- 고객은 증권회사가 A회사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증권회사 ELS 상품에 가입
- 증권회사는 위험 회피를 위해 외국계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 계약을 맺음
- 외국계은행이 만기일에 A회사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한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짐

판단내용

- 외국계은행은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일에 매도한 A회사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의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인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36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ELS 발행회사의 거래가 중간평가일 장 막판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하는 등 델타헤지 거래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중간평가일 A주식회사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조기상환 받을 수 있는 ELS 상품을 가입
- 하지만 중간평가일 2시 50분 기준가격 이상이었던 주가는 증권회사가 장 막판 대량 매도에 나서는 방식으로 델타헤지 (Delta Hedge)를 시도하면서 중도상환이 무산됨

판단내용

- 증권회사는 A주식회사 주식을 장 전반에 걸쳐 분산하여 매도하지 않고 장 종료 무렵에 대량으로 기준가격 이하의 매도주문을 하였는데

* 14시 40분까지는 호가를 높게 제시해 대부분 매도계약이 무산되었으나, 14시 50분부터는 기준가격보다 저가에 집중매도함

- 그것이 비록 델타헤지* 거래이더라도 투자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임

* ELS 발행기관이 주가 하락시 주식 매수, 주가 상승시 주식매도로 기초자산을 적정 수량 보유하면서 손익을 상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운용수익을 상환자금으로 마련하는 기법



37 기타분쟁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 2. 11 선고 2014가단148849]

과거 증권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지인에게 투자위임을 한 후 손해를 봤을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사건개요

- 스님은 법당의 신도로 증권회사 근무경험이 있는 A가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해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 수익금에 대해 50:50으로 나누기로 하고 돈을 맡겼으나 예상치 못한 큰 낙폭이 발생해 투자금의 16%만 남아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친분관계에 기초해 스스로 A의 능력을 믿고 투자를 위임한 이상, 결과가 손실이더라도 A가 본인의 투자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음
- 수익금에 대한 50:50 분배 약정도 손실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A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또는 각오에 불과



38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6. 1. 7 선고 2013다88447]

자본시장법상 거짓·허위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주주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

사건개요

- A회사는 유상증자 한달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주관사인 증권회사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기재 또는 표시 누락했다고 소송을 제기

* 유증에 직접 참여한 주주 11명과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5명

판단내용

-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주주들(11명)의 청구에 대해 증권회사가 거짓기재·표시누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 또한, 자본시장법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히 구분하고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해둔 것임

- 손해배상청구권자에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주주들에 대해서도 기각



39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6. 1. 7 선고 2013두6107]

해외펀드가 전체적으로 손해인데 환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고객은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큰 투자 손실을 봄. 다만, 극단적인 환율이익이 발생하면서 환차익으로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음
- 고객이 해외펀드를 환매하자 세무서는 환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고객은 전체적으로 손해인데 환차익에 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옛 소득세법 제17조가 국외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가격 손익과 환율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하며
- 주가하락으로 본 손해를 환율 상승이익으로 일부 상쇄했다라도 전체 투자금액으로는 손해를 본 상태라면 환차익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40 기타분쟁 판례

[대법원 2015. 11. 9 선고 2015도10308]

투자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자 포털 게시판에 투자경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투자자는 피고의 권유로 A사에 투자를 했으나 A사는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함
- 투자자는 포털 게시판에 유사수신 혐의업체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글을 9회 올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판단내용

-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 투자권유 받은 내용, 투자경위, 투자이후 피고와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과 함께 피해자 제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
- 유사수신 혐의업체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쓰긴 했으나 인신공격이라 보기 어렵고 비실명처리한 점을 감안시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음



41 기타분쟁 판례

[서울고법 2015. 8. 27 선고 2014나2019187]

자칭 주식고수(피고)가 투자기법 등으로 현혹해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 등을 받았으나, 재판부가 피고의 투자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착오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개요

- 피고는 오랜 연구 결과 수학적·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주식차트 이해법 등의 독자적 투자기법을 구축했다며 회원 가입비와 승급비를 내면 5단계 회원등급별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회원들을 모집
- 투자자들은 2,600여만원~4,300여만원의 돈을 냈지만 피고의 추천이 별다른 투자기법이라 할만한 내용이 없음을 알게 되자 가입비 등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피고는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했을 뿐이고 해당 투자에서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했음
- 피고의 종전 투자규모, 수익률 등을 감안했을 때, 투자자들은 피고의 투자능력, 투자기법 등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
- 투자자들이 피고의 주식투자 능력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피고는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



42 기타분쟁 판례

[부산지법 2016. 2. 11 선고 2015고합603]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행위로 거액을 편취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개요

- NPL*투자로 매달 3%의 배당금과 6개월~1년의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일당은 수백억의 투자금을 유치

* NPL(Non 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금을 합친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을 의미

- 그러나, 보유한 NPL채권은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투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도 바로 처분이 어려워 약속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판단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
- 피해자가 900여명에 편취액이 약 600억원으로 매우 큰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43 기타분쟁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5. 11. 26]

장마감 10분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지수를 시세 조정한 경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사례

사건개요

- 외국계 증권회사가 장마감 10분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코스피 200지수가 247.51포인트로 급락 (정상적이었다면 252.55포인트로 예상)
- 동 시세조정행위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였고, 특히 다른 투자자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없도록 매매호가 제출 시점도 지연시킴
- 이로 인해 사모투자증권신탁을 운용한 은행이 매도한 풋옵션 (특정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손실을 입게 되어 소송을 제기

판단내용

- 시세조작이 없었다면 은행이 매도한 풋옵션은 정상 코스피200 지수(252.55포인트)보다 행사가격이 낮아 매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풋옵션 행사로 손실한 금액 전부가 배상되어야 한다고 판단

* 이와 별도로 5개 금융사가 낸 타 소송에서는 피해금액의 80%를 배상하도록 화해 권고되고 피해 금융사들은 이를 수용

